

2021.01.06.

No.2

통상 이슈 브리프

마침내 결별한 영-EU,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

김정균 수석연구원(02-6000-5608, jk.kim@kita.or.kr)

I 영-EU 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의의

- EU와 영국은 2020년 2월 1일 이행기간(Transition Period)에 돌입하자마자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, 2020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「EU-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(EU-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)」을 타결함
- 코로나19 여파와 협상 난항 등으로 노딜(No deal)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나,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, 공정경쟁조건,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

<「EU-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」의 주요 쟁점 및 타결 결과>

구 분	타결 내용
상품교역	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적용
어업권	EU 어획량 25% 감축, 전환기 5.5년 (당초 EU 어획량을 80% 감축하고 3년 전환기간을 주장한 영국 입장을 양보)
공정경쟁	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 및 환경 기준 낮추지 않음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기준 변경에 대한 구제조치 가능
분쟁해결	독립적인 중재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영국은 EU 사법 재판소 및 EU법에 제한 받지 않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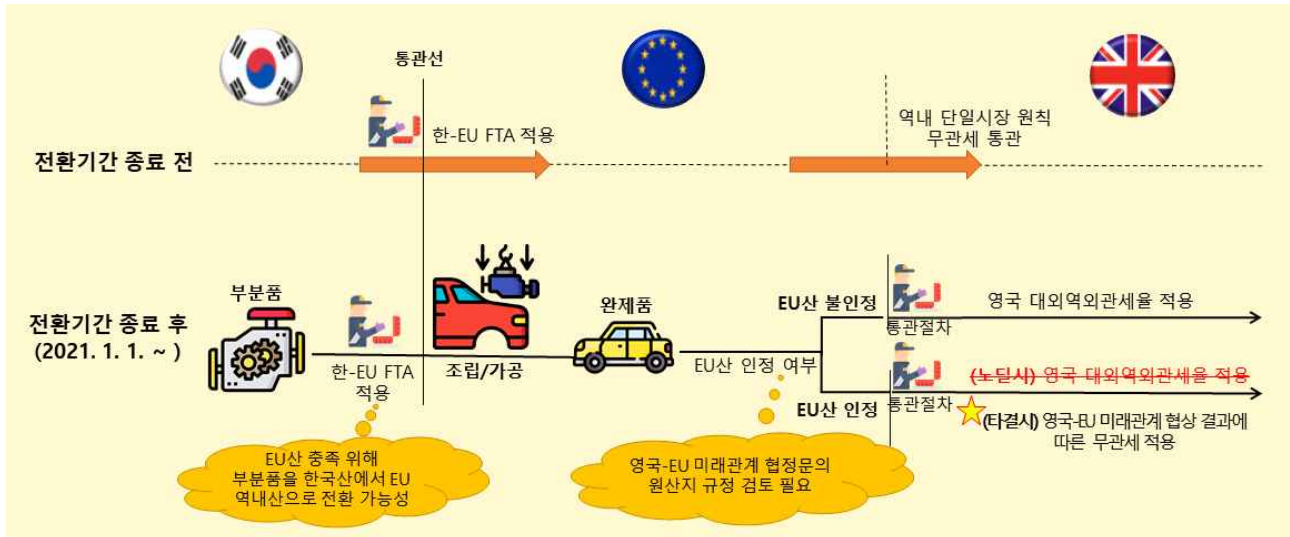
자료: 「EU-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」 참고하여 저자 작성

- 양측은 2020년 12월 30일 서명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, 이행기간 종료 직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동 협정이 임시 발효됨
- EU는 이사회의 임시 발효결의(2020.12.29.)까지 통과되었으며, 유럽의회 및 회원국 모두 비준 절차를 거쳐 2021년 중에 정식 발효 예정

□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국-EU 간 상품교역 시 계속해서 무관세·무쿼터 원칙이 적용됨

○ 이행기간 내 협상 타결이 불발되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, EU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영국의 MFN(WTO협정 상 최혜국대우) 관세율 적용 우려가 있었음

<시나리오 별 EU-영국 교역 시 적용 관세율>



자료: 저자 작성

○ EU 역내에서 생산하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영-EU 협정 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, 원산지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

- 기계(HS84), 전자기기(HS85)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대부분 세번변경 만¹⁾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

* 한-EU FTA나 일-EU EPA처럼 역외산부품 최대비율(MaxNOM) 및 부가가치(RVC)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음

- 한국 및 중국산 배터리 부품 비중이 30~50% 가량 차지하는 전기·하이브리드차의 경우 EU 역내 배터리 생산기반 조성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역외산 부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

* EU는 역내 배터리 시장규모가 2025년 약 250억 유로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2017년 10월부터 유럽배터리연합(European Battery Alliance, EBA)을 결성하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 육성을 추진 중

1) 단, 8544~8548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추가되지 않고 MaxNOM 50% 기준이 적용

< 영-EU 무역 협정의 주요 품목 원산지 규정 (품목별 세부 기준은 협정문 본문 참조) >

구분 (HS2 기준)	원산지 규정	
유기화학품(29)	CTSH 또는 MaxNOM 50% (HS290543 ~ 290545 품목 예외)	
의약(30)	세번변경(CTSH, 품목별 필수공정 포함) 또는 MaxNOM 50%	
철강 및 제품(72)	세번변경(CTH 또는 CTSH, 일부 품목 단서조항 有)	
기계류(84)	대부분 CTH(일부 품목 단서조항 有) 또는 MaxNOM 50%	
	841311 - 841510 841581 - 841590	CTSH 또는 MaxNOM 50%
전기전자(85)	대부분 CTH(일부 품목 단서조항 有) 또는 MaxNOM 50%	
	8544 - 8548류	MaxNOM 50% 기준만 적용
	배터리 (8507류 중 일부)*	CTSH/CTH or MaxNOM 70%(~2023년) ☞ CTH or MaxNOM 40%/55%(~2026년) ☞ CTH or MaxNOM 30%/35%(2027년~)
일반차량(87)	완성차(8701~8707), 새시(8706), 차체(8707), 자전거(8712)	MaxNOM 45% 기준 적용
	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량 (8702-8704 중 일부)	MaxNOM 60%(~2023년) ☞ MaxNOM 55%(~2026년) ☞ MaxNOM 45%(2027년~)
	부품품 및 기타차량 (8708-8711, 8713-8716)	CTH 또는 MaxNOM 45%

주 : CC(2단위 세번변경), CTH(4단위 세번변경), CTSH(6단위 세번변경), MaxNOM(역외산 부품 최대비율, EXW 기준)
 자료 : 「EU-UK_Trade_and_Cooperation_Agreement」 바탕 저자 정리

II 영국 및 EU 수출기업의 대비사항

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통관, 인증,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

* 브렉시트 대응 관련 문의 (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, 02-6000-5608)

① 한-영 FTA 발효에 따른 점검

□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국은 한-EU FTA의 당사국에서 제외되나, 한-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

○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 결정 직후 한-영 무역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(2016.12.), 총 7차례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한-영 FTA가 정식 서명

○ 이에 따라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4억 유로 상당 품목(2019년 기준)은 계속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짐

< 한-영 FTA에 따라 무관세 수출이 계속 유지되는 품목 현황 (2019년 기준) >

(단위 : 개, 억 유로, %)

구 분	품목 수	(비중)	금액	(비중)
영국의 對한국 수입 품목	2,924		45.7	
한-영 FTA 발효로 계속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품목	1,393	(47.6)	24.0	(52.0)

주 : HS 8단위, 2019년 영국의 對한국 수입액 기준

자료 : Eurostat

□ 영국과 EU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FTA가 각각 다른 만큼 수입자의 인증수출자 소재국을 확인하고, 특히 한-영 FTA 상의 원산지 누적 및 직접운송 요건 완화사항을 체크

- (인증수출자)²⁾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-영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, 마찬가지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한-EU FTA 적용 불가
- (원산지누적) 한-EU FTA에서는 영국이 FTA 비당사자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국산 재료 및 공정 누적이 불가능하나, 한-영 FTA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 및 공정 누적 가능
 -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한-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 가능
- (직접운송) 한-EU FTA에서는 단일탁송화물³⁾의 단순환적과 일시보관 외의 경유수출은 직접운송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, 한-영 FTA는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직접운송 요건이 적용됨
 - 한-영 FTA에서는 물품을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 하에서 탁송품의 분리,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

② 운송 및 통관지연 대비

□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-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,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 대비

- 특히 영국은 전체 수입의 49.1%(2019년 기준 전체 6,160억 유로 중 3,022억 유로)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, 2021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 혼란이 불가피
- 한국의 對영국 수출품은 이미 역외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관절차 상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, 영국 세관의 EU 수입품 통관업무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함

2) 한-EU FTA 및 한-영 FTA에서는 6천 유로 초과 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FTA 적용이 가능함

3) 단일한 수출자로부터 단일한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이거나, 단일의 운송 서류 또는 송품장이 발행된 물품

③ 규제 및 인증 효력 문제 확인

□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되며,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

- EU는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지 않음
- 영국은 CE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인증인 UKCA를 발표하였으나,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도 인정할 계획

< 제조상품의 영국 및 EU 출시 시 허용되는 인증 >

제품유형		허용되는 인증 혹은 조합
영국(GB)에 제품 출시	2021년 12월 31일까지	UKCA 혹은 CE인증
	2022년 1월 1일 이후	UKCA마킹 -동본된 문서 혹은 패키징에 부착 가능 -제품에 마크 부착 의무는 2023년 부터
EU에 제품 출시		CE인증만 허용
북아일랜드(NI)에 제품 출시	EU 평가기관에서 검증	CE인증
	UK 인증기관에서 검증	CE+UKNI (UKNI 단독 부착 불가)
품질 입증된 북아일랜드(NI) 제품의 GB시장 출시 - 제한없이 GB 시장에 출시 가능(Unfettered access)		CE인증 혹은 CE+UKNI인증

자료 : UK GOV(www.gov.uk)

- 한편, 정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영국 등록/인증(UKCA 등)과 CE 인증기관 전환 (영국기관→유럽기관)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정

<참고>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현황

- ▶ 시험, 인증, 컨설팅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%(한도 1억원)까지 성공조건부로 사후지원
- ▶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에서 신청 가능(2021.2월, 5월, 8월)

<참고> 브렉시트 관련 주요 문의처

- ▶ (종합안내) 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(02-6000-5608)
KOTRA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(1600-7119)
- ▶ (영국현지 대응) 한-영 FTA 활용지원센터 (+44-20-7520-5300)
- ▶ (관세/FTA) 관세청 한-영 FTA 특별지원팀

세관명	전화번호	팩스	이메일
인천세관	032-452-3634/3644	032-891-9203	incheonsupport@korea.kr
서울세관	02-510-1384	02-548-0211	seoulsupport@korea.kr
부산세관	051-620-6953	051-620-1118	busansupport@korea.kr
대구세관	053-230-5183	053-230-5609	daegusupport@korea.kr
광주세관	062-975-8193	062-975-3113	gwangjufta@korea.kr
평택세관	031-8054-7042	031-8054-7282	fta016@korea.kr

- ▶ (인증) 국가기술표준원 인증·표준 콜센터 (1381)
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,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관련)